##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8403

발의연월일: 2022. 11. 23.

발 의 자:김성원·김정재·김희곤

노용호 • 박대수 • 박덕흠

이양수 · 이종배 · 정찬민

조명희 · 최영희 의원

(11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소기업이 나아갈 방향과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창의적이고 자주적인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나아가 산업 구조를 고도화하고 국민경제를 균형 있게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최근 정치·경제·사회·문화적 환경 변화로 취업난이나 주거불안 정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을 위한 정책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청년지원과 청년정책의 기본적 사항을 정하는 내용으로 「청년기본법」이 제정되었는바, 그 제정 취지에 맞추어 "청년"의 취업·창업 등을 지원을 보다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청년의 중소기업 창업·취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정부가 실 시하는 중소기업 활동 촉진 시책의 정책대상에 청년을 추가하려는 것 임(안 제17조).

법률 제 호

##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중 "여성"을 "청년, 여성"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7조(지방 소재 중소기업 등의	제17조(지방 소재 중소기업 등의
육성) 정부는 지방에 있는 중소	육성)
기업을 육성하고, <u>여성</u> 과 장애	<u>청년, 여성</u>
인의 중소기업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	
야 한다.	